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13 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이재정·기동민·김경협

김남국 • 김민기 • 김영호

김원이 · 도종환 · 오영환

이탄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「소방법」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,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.

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,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정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나.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.

#### 법률 제 호

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)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.

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"를 "대원으로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의용소방대의 날 제정
	과 운영) ① 의용소방대의 숭
	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
	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
	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
	<u>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.</u>
	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
	<u>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따로</u>
	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) ①	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) ①
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	
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	
임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	2
우. 다만, <u>2개 이상의 소방서</u>	<u>대원으로서</u>
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	
<u>서는 대원으로서</u> 활동하는 데	
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